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0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2. 9.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186,660원, 지방교육세 615,990원, 가산세 합계 1,928,880원(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437,33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52,75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는 피상속인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2013. 10. 22.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redacted]구 F아파트 [redacted]동 [redacte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30. 접수 제18025호로 2013. 10.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B(피상속인의 배우자) 앞으로 3/9지분, 원고, C, D(피상속인의 자녀들) 앞으로 각 2/9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B, C, D는 2015. 1. 28.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 28. 접수 제4830호로 2014. 11. 12.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소유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아파트 중 7/9지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186,660원, 지방교육세 615,990원, 가산세 합계 1,928,880원(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437,33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52,75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8,8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협의를 하던 중 장남인 C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증여로 볼 수 없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2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등기 등이 마쳐진 후에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2) 갑 제17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의 와중에서 분할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C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C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 즉 상속재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2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2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부칙 <제12153호, 2014.1.1>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